

산업자문 운영지침

제정일 : 2013.03.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비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산업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산업자문 방법 등)

- ① 연세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산학협력단장과 산업자문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② 산업자문을 담당한 교(직)원은 협약에 정한 대로 산업자문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자문료 납부)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집행) ① 산업자문료(공급가액 기준)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90%를, 산학협력단에 10%를 배분한다.

-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납입일 기준 30일 이내에 교(직)원에게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

제6조(실적평가반영) 교(직)원의 산업자문에 따른 교원업적평가 반영 기준은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기타사항) 산업자문 관련서식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산업자문 표준계약서

2012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갑’

주소:

상호:

대표:

(인)

을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단장

(인)

연구책임자:

(인)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의뢰하고 “을”이 수행하는 산업자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산업자문”의 범위 및 결과물)

- 1) “산업자문”이라 함은 연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 (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2) 이 계약에서 “산업자문”이란 “갑”이 의뢰한 “산업자문”을 “을”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을”이 제공하는 “산업자문”의 범위와 그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적 기술”에 대한 자문 및 그 결과 보고서
 2. 기타 상세한 “산업자문”의 범위 및 결과물은 별도로 정의하는 산업자문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 3 조 (“산업자문”의 기간)

“을”의 “산업자문”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로 한다. 위 기간은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세 일정 계획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 4 조 (지적 재산권 및 결과물 귀속)

본 계약에 따른 “산업자문”의 결과로 발생한 자문결과 보고서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 각종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 5 조 (“산업자문”의 대가 및 지급 방법)

- 1) “산업자문”의 대가는 본 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_____ 원(VAT 별도)으로 한다.
- 2) “산업자문”의 대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의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명칭의 사용)

- 1) “갑”은 광고, 선전, 판매 촉진, 기타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용하거나 자문 성과를 신문, 잡지, 인터넷, 기타 언론매체, 자사 홈페이지에 보도/제공/게재하지 아니한다.
- 2) “갑”은 광고, 선전, 판매 촉진, 기타 목적으로 “을”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 “을”을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1) “갑”의 해지
“을”이 본 산업자문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을”의 해지
“갑”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산업자문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을”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해지협의

본 조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시점까지 산업자문비집행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시점까지 산업자문을 위하여 을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사용된 산업자문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족한 금액은 갑이 을에게 추가 지급하며 잔액은 을이 갑에게 반환한다.

4)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효력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9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당사자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당사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기타 사항)

1) “갑”과 “을”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합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청, 담보제공 또는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